



금융감독원

보도자료



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

보도	배포 시	배포	2022.9.28.(수)		
담당부서	감독총괄국 감독총괄팀	책임자	국장	이창운	(02-3145-8300)
		담당자	팀장	류영호	(02-3145-8001)

만기연장·상환유예 중인 소상공인·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
□ 금융감독원은 9.27 발표(10.4 시행)된 만기연장·상환유예 연장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·중소기업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춰 불편함 없이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.

- ※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내용
- ☑ 만기연장 차주 :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라 내입(일부 상환요구)이나 급격한 가산금리 인상 없이 최대 3년간 지원
 - ☑ 상환유예 차주 : '23.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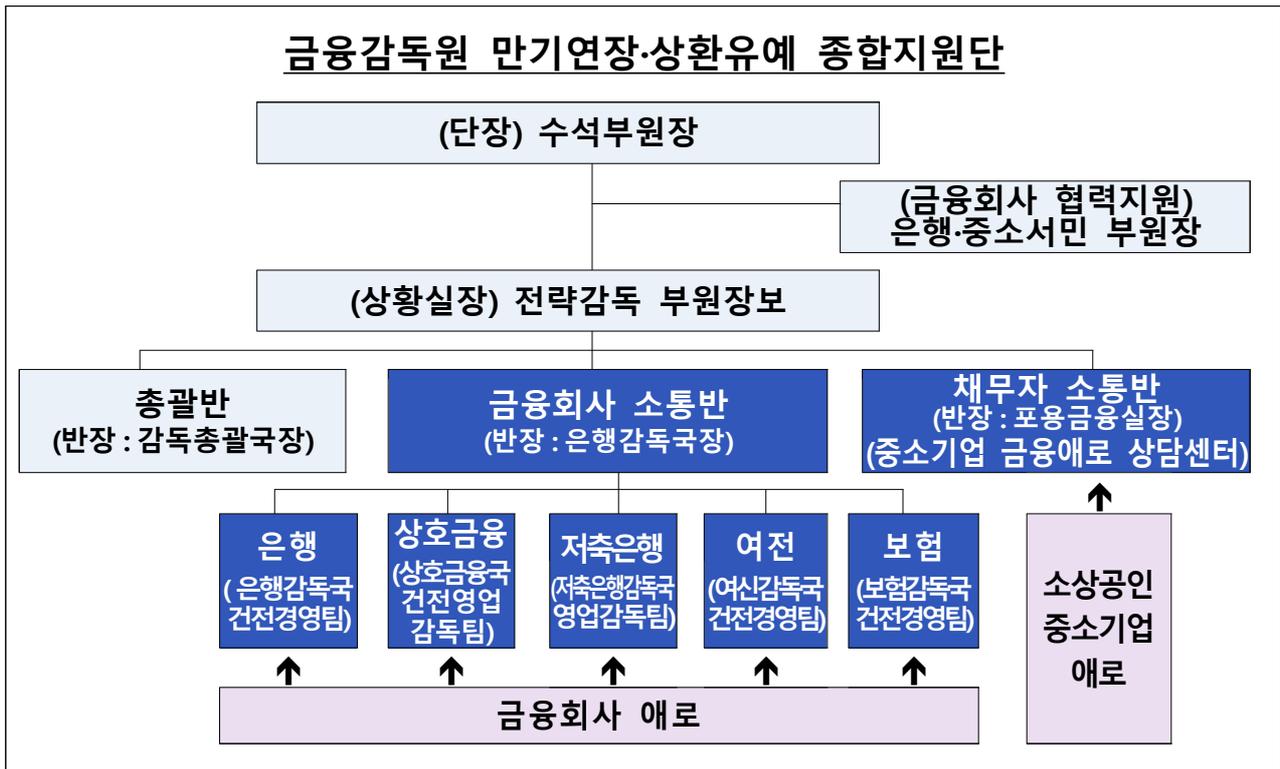
□ 금융감독원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주 및 금융회사 영업점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「종합지원단」을 설치·운영하는 한편,

- 금융회사도 영업점 등 현장에서 1:1 상담을 통해 차주 상황에 맞는 최적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점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자체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.

□ 아울러, 금융권이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과 마찬가지로 「코로나19 피해 만기연장·상환유예 건에 대한 금융회사 면책 조치」를 계속 적용하여

- 고의·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대해 제재하지 않고

- 만기연장·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유지 관련 법령해석도 그대로 적용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.



-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연장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차주는 먼저 현재 거래하시는 금융회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라며,
 - 문의·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 「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」 내 전담창구(☎1332→6번 선택)와 개별 금융회사 및 금융업권 지원센터(붙임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금융회사 영업점의 경우 당해 회사 본점 및 금융업권 지원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종합지원단을 통해 애로사항 문의 가능

- 금융감독원은 집중 상담기간("22.9월~12월)을 운영하여 만기연장·상환유예 연착륙 과정에서 우려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원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

붙임

금융업권 지원센터 연락처

기관	전화번호	기관	전화번호
< 은행 >			
국 민	☎ 1588-9999	경 남	☎ 1600-8585
신 한	☎ 1577-8000	대 구	☎ 1566-5050
우 리	☎ 1588-5000	부 산	☎ 1588-6200
하 나	☎ 1588-1111	광 주	☎ 1588-3388
농 협	☎ 1661-3000	제 주	☎ 1588-0079
수 협	☎ 1588-1515	전 북	☎ 1588-4477
씨 티	☎ 1588-7000	기업은행	☎ 1588-2588
SC제일	☎ 1588-1599	산업은행	☎ 1588-1500
수출입은행	☎ 3779-6114	은행연합회	☎ 3705-5000
< 신용카드사 >			
신 한	☎ 1544-7000	하 나	☎ 1800-1111
KB국민	☎ 1588-1688	우 리	☎ 1588-9955
삼 성	☎ 1588-8700	롯데	☎ 1588-8100
현 대	☎ 1577-6000	여신금융협회	☎ 2100-0700
비 씨	☎ 1588-4000		
< 보험협회, 저축은행, 상호금융중앙회 >			
생명보험협회	☎ 02-2262-6530	손해보험협회	☎ 02-3702-8572
저축은행중앙회	☎ 397-8600	새마을금고중앙회	☎ 1599-9000
농협중앙회	☎ 1661-2100	수협중앙회	☎ 02-2240-2102
신협중앙회	☎ 1566-6000	산림조합중앙회	☎ 02-3434-7231